

『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농산물안전분석실 신규 개소에 따라 분석실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운영 지원(안 제1조 ~ 제3조)

나. 농산물안전분석실 의뢰 및 운영(안 제4조, 제5조)

다. 분석 결과 통지 및 활용, 광고 등의 정정(안 제6조 ~ 제8조)

라. 수수료 및 수수료의 면제(안 제9조, 제10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, 「농촌진흥청 시험·분석 및
검정 의뢰 규칙」, 「소비자기본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
관리에 관한 훈령」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○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친환경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구미시에 개소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써,

○ 2019.1.1.부터 시행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(PLS)에 의거 농산물 안전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을 통해 관내 농업인의 분석 비용 부담 경감 및 출하 전 검사로 농업인 소득 손실의 사전 예방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통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